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3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3. 10. 11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 삭제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- 공영주차장 동·하절기 구분 혼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구분 필요성이 낮아져 동·하절기를 폐지하고 주간 시간을 08~20시로 통합
-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30%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- 제25조제3항
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“영 제17조제2항”을 “영 제17조”로 개정
- 별표1의 3
 - 동·하절기 구분을 폐지하고 주간 시간을 08~20시로 통합
- 별표1의 6
 -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할 경우 10% 감면사항 삭제
 -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30% 감면사항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나. 입법예고

1) 예고기간 : 2023. 8. 24. ~ 2023. 9. 13.(20일간)

2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다. 부서협의

1) 협의기간 : 2023. 6. 19. ~ 2023. 6. 26.(7일간)

2) 협의결과

- 성별영향평가(여성아동과): 개선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대상 여부(법무담당관)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라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7조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에 제3항 중 “영 제17조제2항”을 “영 제17조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관·과		주차관리과
입안자	관·과장 직위·성명	주차관리과 서 동 진
	팀장 직위·성명	주차계획팀장 엄 강 석
	담당자 성명·전화	조 준 원 (031-590-876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과징금 처분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영 제17조제2항</u>에 따라 과징금 가·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5조(과징금 처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영 제17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

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5조제1항 관련)

주차장	급지구분	1구획당 주차요금		1일 주차 요금	월 정기 주차요금		
		기본 30분	30분 초과 10분마다		주간	야간	주야간
노 상 주차장	1급지	600원	300원	7,000원	70,000원	50,000원	-
	2급지	500원	150원	5,000원	50,000원	40,000원	-
노 외 주차장	1급지	600원	300원	7,000원	70,000원	50,000원	100,000원
	2급지	500원	200원	5,000원	50,000원	40,000원	80,000원
거주자우선 주차장					20,000원	20,000원	30,000원

-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며, 공영주차장의 1일 단위시간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,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%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,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- 주차요금은 승용차, 15인승 미만의 승합차, 2.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 - 가.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2.5톤 이상 4.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: 기준요금의 2배
 - 나.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.5톤 초과 화물 자동차 : 기준요금의 3배
- 주간 시간은 08:00 ~ 20:00로 하며,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.
-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. 다만,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5. 급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급지구분	지역
1급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
2급지	1급지 외의 지역

6. 주차요금의 감면

감면구분	감면대상
전액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○ 주차장 이용시간 10분 이내 자동차
60%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
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·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
50%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○ 「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○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남양주시 아이플러스카드, 주민등록등본 등)를 소지한 자(부모를 말한다)의 자동차 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65세이상)이 운전하는 자동차 ○ 철도를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(증빙자료 : 해당역 확인증, 재직증명서 등) ○ 「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시장(市長)이 인정하는 시장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 ○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

감면구분	감면대상
	<p>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용차부제(또는 요일제)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로서 이를 증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 또는 자동차표지 부착 자동차 ○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30%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,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·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(스티커)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○ 「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년도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○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, 해당 학교 교직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설치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까지 주차요금 면제(단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까지 면제 가능)

[비고]

1.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.
2. 주차요금 중 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30%감면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입 감소
- 공영주차장 주차권 선매 수입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2. 12.	2023. 1.	2023. 2.	2023. 3.	2023. 4.	2023. 5.
주차권 선매						
수입금	14,040	13,950	13,230	19,890	21,870	18,810

※ 월평균 선매 수입금 : 16,965천원(10%감면된 금액)

- 예상 세입 감소액 추계치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세입 감소액	45,240	45,240	45,240	45,240	45,240	45,240

※ 월평균 세입 감소액 : 16,965(10%감면) - 13,195(30%감면) = 3,770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.

4. 작성자 : 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서동진

붙임2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통보서

- 상상 더 이상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주차관리과장
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(2023A경기남양056)-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주차관리과-8443(2023. 6. 15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붙임 검토의견 통보서(2023A경기남양056) 1부. 끝.

여 성 아 동 과 장

주무관	이연희	여성정책팀장	김일녀	여성아동과장	이진춘	2023. 6. 19.
협조자						
시행	여성아동과-17069	(2023. 6. 19.)	접수	주차관리과-8627	(2023. 6. 20.)	
우	12284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(다산동)				/ http://www.nyj.go.kr
전화번호	031-590-3965	팩스번호	031-590-2269	/ yhlee0127@korea.kr		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! -

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- 상상 더 이상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주차관리과장

(경유)
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(2023-47)

주차관리과-8514(2023.6.16.)호와 관련하여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 개정(안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■ 주요평가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

■ 평가 결과 : **원안동의**

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. 끝.

감 사 관

주무관

김주현

청렴윤리팀장

신경주

감사팀장

대결 2023. 6. 23.

박선영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7094

(2023. 6. 23.)

접수 주차관리과-8888

(2023. 6. 26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(금곡동)

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719

팩스번호 031-590-1985

/ sjh99006@korea.kr

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! -

붙임4 규제심사 결과

- 상상 더 이상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주차관리과장

(경유)

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(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 일부개정안)

1. 남양주시 주차관리과-8514(2023. 6. 16.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, 해당 개정안은 상 위법령 일치화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, 「행정규제기본법」상 행정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법 무 담 당 관

주무관	조현기	적극행정팀장	남상명	법무담당관	김진배	2023. 6. 19.
협조자						
시행	법무담당관-7414	(2023. 6. 19.)		접수	주차관리과-8567	(2023. 6. 19.)
우	12232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(금곡동)				/ https://www.nyj.go.kr/
전화번호	031-590-7320	팩스번호	031-590-2900	/	hgj1235@korea.kr	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! -

붙임5 입법예고 결과 보고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(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주차관리과-12005(2023.08.18.)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
2.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개 정 안 :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예고기간 : 2023. 8. 24. ~ 2023. 9. 13. / 20일간
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향후계획 : 제48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제출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주무관	조준원	주차계획팀장	엄강석	주차관리과장	서동진	교통국장	전결 2023. 9. 14. 오철수
협조자	법무담당관	김진배					
시행	주차관리과-13356			접수			
우	12212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, 주차관리과			/	https://www.nyj.go.kr/	
전화번호	031-590-8761	팩스번호	031-590-5439	/	cjw0319@korea.kr	/	대국민 공개

-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! -

붙임6 관계법령

○ 주차장법 시행령

제17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) 법 제24조의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.